

## 2025년도 경기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『2025년도 경기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3. 21.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## 1

###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(이전) 3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, 초기 R&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
-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(신설)을 통한 경기도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

#### □ 지원규모 : 10개 과제 내외 (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 원 이내)

#### 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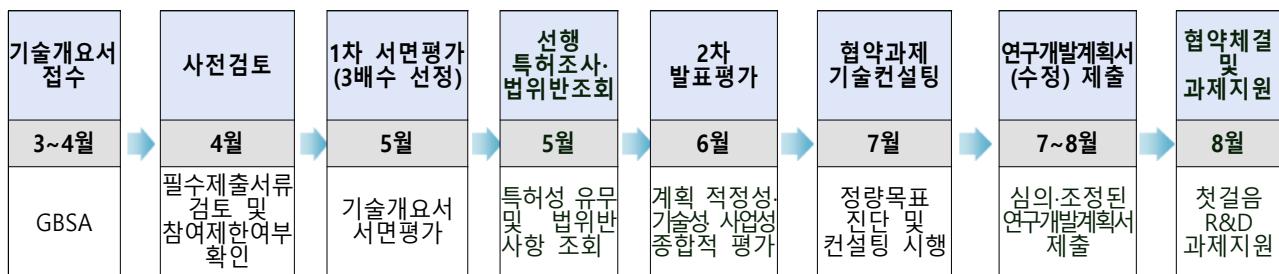
#### □ 전문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#### □ 지원대상 **\*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복하여 신청·접수할 수 없음**

- (연구소 신설)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
- (연구소 이전)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

#### □ 지원내용 :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, 직접비(연구장비·재료비), 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등) 지원

## □ 추진절차



\* 1차년도 사업 추진절차(예정)이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예정

## 2

## 지원금액 및 기간·사업비

### □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
  - \* 기업 단독연구개발 또는 도내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신청 가능
  - \* 세부사항은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
  - \* 1차년도 연구개발 종료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
- 지원규모 : 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원
- 지원내용

구 분	1차년도(2025년)	2차년도(2026년)
지원기간	협약체결 후 1년	협약체결 후 1년
	* 협약체결은 평가 일정에 따르며 1차년도 최종(단계)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 여부 결정	
주관연구기관	[신설]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[이전]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*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	
공동연구기관	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	
지원규모	최대 1.5억원 내외/년	최대 1.5억원 내외/년
선정범위	10개 과제 내외	10개 과제 내외

- 1) 도내 기업 :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 중인 자
- 2)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복하여 신청·접수할 수 없음
- 3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는 사업 공고기간 내 제출한 인정서 설립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
\* 세부 지원 자격 사항은 하단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
□ **기관부담연구개발비** : 총 연구개발비의 25%(현금+현물) 이상 부담

\*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총 지원연구개발비의 10 ~ 20%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

주관연구기관 유형	총 연구개발비 대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
중소기업	25%(현금 10%)이상
중견기업	25%(현금 15%)이상
대기업	25%(현금 20%)이상

총 연구개발비	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
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	75% 이내 (연간 최대 1.5억원 이내)	25% 이상 (현금 10%, 현물 15%)

\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'지원연구개발비'의 10% 이상

[참고 1]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

- 중소기업이 지원연구개발비 1.5억 원 신청할 경우

구 분	지원연구개발비(A)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합 계 (총 사업비) (D)
		기관부담 현금(B)	기관부담 현물(C)	
계산식	A≤(총 사업비×0.75)	B≥(지원연구개발비×0.1)	C=총 사업비-(지원연구개발비+기관현금)	-
금 액	150,000,000원	15,000,000원	35,000,000원	200,000,000원
비 중	최대 75%	10%	15%	100%

### 3

### 신청자격

□ **기준일**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'**공고일 (2025.3.21.)'기준**

\*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자격조건 유지

□ 경기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신청 자격기준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설치·운영 3년 이내 기준

수행기관별		신청자격	
주관연구 기관	기업	「 <b>연구소 신설</b> 」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(①과 ② 모두 종족해야 함)	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 · 운영 ② <b>공고기간 기준</b> ,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<b>신설</b> 하여 설치 · 운영 <b>3년 이내</b>
		「 <b>연구소 이전</b> 」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(①과 ② 모두 종족해야 함)	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 · 운영 ② <b>공고기간 기준</b> ,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로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를 <b>이전</b> 하여 설치 · 운영 <b>3년 이내</b>
		①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 ② 연구소(3년) 설립일 기준 : <b>공고기간 기준 (2022. 3. 21.~ 2025. 4. 11.까지)</b> 연구개발전담부서 도내 신규 설치 또는 도내 이전 기업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상 설립신고일(최초인정일)을 기준으로 함	
공동연구 기관	대학 및 연구기관 등	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※ <b>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지원 불가</b>	

\* 연구소 인정서는 2025. 3. 21. ~ 2025. 4. 11.(공고기간 중) 기간 내 발급분에 한함

## [참고 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 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4

##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□ 신청기간

-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2025. 3. 31.(월) 09:00 ~ 4. 11.(금) 18:00까지
 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**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**
  - \* **접수 마감일에는 많은 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 요망**

### □ 신청방법 (온라인만 가능)

- 경기도R&D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산 제출
    - ①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,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(필수)
    - ② 과제관리 ▶ 접수관리 ▶ 신청서 ▶ 등록
    - ③ 분야별 공고선택 ▶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
    - ④ 기술개요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    - 기술개요서, 서약서 등 신청서류에는 기업(관)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
    - \* 제출된 기술개요서 및 서류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
    - \*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(단,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)
  - 구비 서류 제출
    - 제출 파일명은 '**2025첫걸음\_기관명**'으로 저장 ex) 2025첫걸음\_경과원
    - 제반서류 파일명은 '**2025첫걸음\_기관명\_연번·서식명**'으로 저장 ex) 2025첫걸음\_경과원\_1.기술개요서
    - **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** \* **제출 이후 수정 불가**
- \* 반드시 **파일 추가** → **'저장'** 버튼 클릭 → 최종검토 후 **'제출'**
- \* **'저장' 및 '제출'버튼을 누르지 않아 파일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,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구제 불가**

## ① 신청 서류 목록 (최초 제출서류)

\*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

연번	서식명	제출 유무	
		주관기관	공동기관
①	기술개요서 1부 (소정양식,『서식1』참조)	○	
②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(해당시)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※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www.hometax.go.kr/">https://www.hometax.go.kr/</a> )에서 <b>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</b>	○	○
③	주관연구기관·공동연구기관(해당시)의 법인등기부등본(영리기관·법인사업자) 각 1부 ※ <b>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</b>	○	○
④	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(소정양식,『서식2』참조)	○	○
⑤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www.rnd.or.kr/">https://www.rnd.or.kr/</a> )에서 <b>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</b>	○	
⑥	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소정양식,『서식3』참조)	○	○
⑦	(해당시) 공장등록증 1부 ※ <b>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</b> ※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미설치,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	○	

## ② 발표평가 대상기관 추가 제출 서류 목록 (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함)

\*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하여 추가 제출 안내 예정

연번	서식명	제출 유무	
		주관기관	공동기관
①	연구개발계획서 1부 (소정양식,『서식4』참조)	○	
②	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최근(법안: 24년 귀속분, 개인사업자: 23년 귀속분)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 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세무사 확인본)' 원본 제출	○	
③	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(소정양식,『서식5』참조) ※ 5.지원제한 ④참조	○	
④	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각 1부 (소정양식,『서식6』참조)	○	
⑤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	○	○
⑥	NTIS 제재정보 확인서 - 본인제재확인서 (기관대표(주관), 총괄책임자(주관·공동)) - 소속기관제재확인서 (주관) ※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모두 제출되어 공동연구기관(도내 대학·비영리기관)의 경우, 공동연구기관의 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및 공동연구기관(소속기관)제재확인서는 미제출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ntis.go.kr">http://ntis.go.kr</a> )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※ 발급방법 FAQ 참고	○	○
⑦	(해당시)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(소정양식,『서식7』참조)		○
⑧	(해당시)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([참고4] 참조) ※ 가산점 중 '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'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	○	
⑨	(해당시) 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	○	○

\*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,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

- 전산등록 마감일[**2025. 4. 11.(금)**] 기준,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·주관연구기관장·연구책임자·공동연구기관·공동연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,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  -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R&D첫걸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
    - \*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
  -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 중 2022. 3. 21.(3년) 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
    - \*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, 대학 및 연구소는 제외
  - ③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    -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      - **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(20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포함)**
      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    - 신청과제가 해당사업(분야)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
      -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를 활용한 경우
  - ④ 이미 개발하였거나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
    -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완료하였거나 또는 이미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
      - 단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
   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
   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
##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로 납부, 기술로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

## ⑥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주관연구기관의 장, 공동연구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

## ⑦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

-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,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\* 단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, 제57조에서 정한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%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- 참여연구원(공동연구기관 책임자도 포함)의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<sup>\*</sup>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20% 이상이어야 함.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
\*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은 30% 이상이어야 함

\* (기관 기본사업)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

## ⑧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## 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

구분	지원제외
검토 기준	<p>1. 기업의 부도</p> <p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5.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※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인 경우 예외</p> <p>6.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인 경우 ※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인 경우 예외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</p>
조치	·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“지원제외”

## 6

## 기술료
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등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
-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경우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증가액을 기준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
\*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을 따름

### [참고 3]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

- 연구개발결과물 직접실시에 의한 매출 발생 ※ 일시납일 경우 40% 감면

징수대상	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동안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(당해연도 말 매출액) - (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말 매출액)
산출요율	A(지원금), B(기술기여도), C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), 50%(징수율 상한)
징수기술료	$0.5 \times A \times B \times C$

-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한 기술료 수익 발생

징수대상	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이내의 기간에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기업
산출요율	A(기술이전수익), B(기술기여도), 50%(징수율 상한)
징수기술료	$0.5 \times A \times B$

## □ 평가기준

### ○ 사전검토(최소자격확인)

- 신청자격 적격 확인을 위한 최소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  - 도내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등

**[지원제외]**

-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(경기도 소재 등)
- ②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### ○ 서면평가(3배수)

-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, 기술개요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·평가
-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- 평가지표 :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(10점),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을 가능성(50점), 연구인력 및 인프라(20점), 사업화 계획(20점)

### ○ 선행특허조사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과제별 기존 기술 관련 선행문헌과의 유사도 및 기술의 진보성·차별성 여부 분석 등 특허성 여부 조사  
⇒ 발표평가위원회에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

### ○ 법 위반 여부 검토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((1)공정거래법 (2)하도급법 (3)표시광고법 (4)근로기준법 (5)산업안전보건법 (6)폐기물관리법 (7)대기환경보전법 (8)소음진동관리법 (9)물환경보전법 (10)국세기본법 (11)지방세기본법) 중 법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

적용법률		내용
I 공정	① 공정거래법	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,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
	② 하도급법	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(原事業者)와 수급사업자(受給事業者)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, 균형발전
	③ 표시광고법	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· 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 ·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	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
	⑤ 산업안전보건법	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	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
	⑦ 대기환경보전법	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,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· 보전
	⑧ 소음진동관리법	공장 · 건설공사장 · 도로 ·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·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, 소음 ·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
	⑨ 물환경보전법	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, 하천 · 호소(湖沼)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· 보전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	국세,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·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(課稅),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
	⑪ 지방세기본법	

### ○ 발표평가

-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  -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(양산)능력 등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
  -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10개사를 지원과제로 선정
  - 평가지표 : 개발계획의 적정성(20점),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(30점), 목표달성 가능성(20점),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·마케팅 역량(30점)
  - 가산점은 발표평가 시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부여되며 유리한 1건 적용
- \* '[참고4]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' 참고

#### [참고4]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

\* 접수마감일(2025.4.11.) 기준 유효기간 이내

① 5점

- 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

② 2점

- 경기도 「산업단지 RE100」 참여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- 경기도 '유망중소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③ 1점

- 경기도 '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- 경기도 '주 4.5일제 참여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- 경기도 '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- '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- 기타 경기도지사가 인증(지정)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

##### - 가산점 적용기준

① 가산점은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유리한 1건 적용 (최대 5점)

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

③ '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'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

④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전산등록 마감일[2025. 4. 11.(금)]을 기준으로 함

- 과제선정 :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\*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선정 이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과제선정 취소

## 8

## 기타 공지사항

### □ 사업설명자료

- 내용 : 20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온라인 접수요령 등
- 링크 :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※ 3.27 게시 예정

### □ 온라인 Q&A 설명회 개최(예정)

- 일시 : 2025. 4. 1.(화) 14:00 ※ 일정 변동 가능
- 내용 : 2025년도 경기도 R&D 사업 관련 질의응답
- 링크 :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공지사항 게시 (Zoom 주소 안내 예정)

**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**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 
(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)
-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
**□ 이행보증보험 가입**

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공동)은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 포함하여 적용
- 발급수수료는 연구비(직접비-연구활동비)로 계상

**□ 기타사항**

-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 · 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

**□ 과제선정 취소**

-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
  - PMS(R&D관리시스템)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  -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
  -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
  - 신청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  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  -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- 경기도 R&D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수행 신청자격(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

## □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 (필수)

-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(사업비 전용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

## □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

-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과금 부과  
※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
## 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
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
  -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·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
 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
- 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

## 9

## 문의처

### □ 사업담당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R&D지원팀

☎ 031-259-6783, 6785 / ☐ rnd@gbsa.or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
서식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기술개요서</li><li>2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</li><li>3.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</li><li>4. 연구개발계획서</li><li>5.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</li><li>6.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</li><li>7. 참여의사 확인서</li></ol>
별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</li><li>2. 산업기술분류표</li><li>3.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. 끝.</li></ol>